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I. 제 출 자

-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3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

II.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 주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지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III. 검토내용

1. 제안이유

- 주민들이 주민감사 청구 시 감사 청구가 용이하도록 연서 인원을 축소하여 주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 도모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주민감사 청구인수 조정(안 제2조)
 - 현행 : 500명 이상 ⇒ 200명 이상

3. 검토의견

- 이천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 감사 청구 시 감사청구가 용이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행 연서 인원을 5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연서 인원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주민 감사 청구의 공신력의 저하 우려와 빈번한 감사 청구 발생으로 인하여 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